

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이세열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행중인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,
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혼란을
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호한 내용 수정 및 세부적인 조항의
확립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행정정보 공표 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
목표관리제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하며
조직개편에 따른 공표 부서 불일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
공개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□ 더불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, 위원의 해촉과 제척, 기피와 회피 사유를 명시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